

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9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3. 1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3. 27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및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 ·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추정규정 삭제(안 제2조 제2항)
- 나.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정규정 삭제(안 제3조 제1항)
- 다.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자구수정(안 제6조)
- 라.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자구수정(안 제9조 제2항)
- 마.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변경(안 제10조 제2항)
- 바.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추가(안 제12조 제1항)
- 사.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변경(안 제16조 제1항, 제2항)
- 아. 재래시장 재개발 ·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법규 명칭변경(안 제17조)
- 자.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(안 제25조 제1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설치목적 및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등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3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